

의안번호	2204987
의 퇴 인	강대식의원
회 답 일	2024.12.20.
추계번호	24D4987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보상금액에 물가상승률을 적용할 경우, 2026~2030년까지 추가재정소요는 631억 5,500만원(연평균 151억 9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억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소음대책지역의 지정	76.75	101.04	125.82	151.09	176.86	631.55	151.0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4조(보상금 지급기준 및 신청절차 등)	보상금액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책정함(제6항)	의무규정

III.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14조(보상금 지급기준 및 신청절차 등)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하여 국방부는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의 소음 영향도를 측정하여 소음대책지역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음

[표 2] 소음대책지역 소음영향도 기준

구분	소음영향도 단위	제1종	제2종	제3종
군용비행장	WECPNL	95 이상	90 이상 95 미만	80 이상 90 미만
소형화기 군사격장	dB(A)	82 이상	77 이상 82 미만	69 이상 77 미만
대형화기 군사격장	dB(A)	94 이상	90 이상 94 미만	84 이상 90 미만

주: 제3종 지역의 경우,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수원시 소재 군용비행장 및 이 비행장 각각의 평균 배경소음도의 최소값보다 평균 배경소음도가 큰 군용비행장은 85이상 90미만임

자료: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소음피해 보상금은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제1종 월 6만원, 제2종 월 4만5천원, 제3종 월 3만원으로 차등지급하고 있으며, 군사격장의 실제 사격일수, 소음대책지역으로의 전입시기, 근무지의 위치, 주민이 실제 거주한 일수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을 감액지급하고 있음¹⁾

1) 군사격장의 사격일수가 없는 경우 보상금 미지급, 사격일수가 1일 이상 8일 미만인 경우 보상금의 1/3 지급, 사격일수가 8일 이상 15일 미만인 경우 보상금의 2/3 지급, 사격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 보상금 전액 지급하고 있음. 또한 소음대책지역으로 전입시기나 근무지의 위치, 주민이 실제 거주한 일수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을 감액지급하고 있음

[표 3] 소음대책지역의 구역별 보상금

(단위: 원)

구분		제1종	제2종	제3종
보상금 기준금액		월 6만원	월 4만5천원	월 3만원
1인당 월평균	2022	36,086	26,932	17,617
보상금 실지급액	2023	36,803	27,799	18,151

주: 1. 군사격장의 사격일수가 없는 경우 보상금 미지급, 사격일수가 1일 이상 8일 미만인 경우 보상금의 1/3 지급, 사격일수가 8일 이상 15일 미만인 경우 보상금의 2/3 지급, 사격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 보상금 전액 지급

2. 소음대책지역으로 전입시거나 근무지의 위치, 주민이 실제 거주한 일수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을 감액함

자료: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 소음피해 보상금은 개정안에 따라 2023년 실제 지급단가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2024.11월)한 소비자물가상승률²⁾을 적용하여 산정
- 현행 소음대책구역에 따른 소음피해보상금 지급인원은 향후 5년간 2022~2023년 평균 지급인원과 동일하다고 가정

[표 5] 소음대책지역의 구역별 보상금 지급인원

(단위: 명)

		2022	2023	2022~2023 평균
현행	제1종	19,181	17,512	18,347
	제2종	99,555	87,888	93,722
	제3종	361,901	321,020	341,461
	합계	480,637	426,420	453,529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 안 부칙에서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회 법안 심사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2)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2024.11월)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아래 표와 같음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소비자물가상승률	2.5%	2.1%	2.0%	2.0%	2.0%	2.0%	2.0%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보상금액에 물가상승률 고려(안 제14조 개정)

- (지원단가) 개정안에 따른 지급단가는 2023년 지급단가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추정

[표 6] 보상금 월 지급단가 추정: 2026~2030년

(단위: 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현행	제1종	36,803	36,803	36,803	36,803	36,803
	제2종	27,799	27,799	27,799	27,799	27,799
	제3종	18,151	18,151	18,151	18,151	18,151
개정안	제1종	39,286	40,072	40,873	41,691	42,524
	제2종	29,674	30,267	30,873	31,490	32,120
	제3종	19,375	19,763	20,158	20,561	20,97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비용추계 결과) 개정안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보상금액에 물가상승률을 적용할 경우, 2026~2030년까지 추가재정소요는 631억 5,500만원으로 추계됨

[표 7] 개정안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보상금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억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현행	제1종	81.03	81.03	81.03	81.03	81.03	405.13
	제2종	312.64	312.64	312.64	312.64	312.64	1,563.20
	제3종	743.74	743.74	743.74	743.74	743.74	3,718.71
	합계(A)	1,137.77	1,137.77	1,137.77	1,137.77	1,137.77	5,688.83
개정안	제1종	86.49	88.22	89.99	91.79	93.62	450.10
	제2종	333.73	340.40	347.21	354.16	361.24	1,736.74
	제3종	793.91	809.79	825.99	842.51	859.36	4,131.55
	합계(B)	1,214.52	1,238.81	1,263.58	1,288.85	1,314.63	6,320.39
추가재정소요(B-A)		76.75	101.04	125.82	151.09	176.86	631.5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보상금액에 물가상승률을 적용할 경우, 2026~2030년까지 추가재정소요는 631억 5,500만원(연평균 151억 900만원)으로 추계됨

[표 8]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억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소음대책지역의 지정	76.75	101.04	125.82	151.09	176.86	631.55	151.0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소음피해보상금 지급인원은 향후 5년간 2022~2023년 평균 지급인원과 동일하다고 가정하여 산정한 결과로, 지급인원의 변화에 따라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상이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전수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전수연	02-6788-4667	syjeon@assembly.go.kr